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9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09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한시기구(마포1번가연구단) 연장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

- 한시정원(3명) : 5급 1명, 6급 이하 2명
- 연장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(1년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8. 12. ~ 8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08.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한시 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(부칙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의한 추가비용(인건비)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총무과 임현경 (☎ 3153-8214)